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0892 가산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8,989,3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01,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3. B으로부터 [redacted]구 C아파트 [redacted]동 [redacte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2,292,2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6. 2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 이 사건 아파트[1]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63,297,830원, 농어촌특별세 7,384,740원, 지방교육세 6,329,780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하였는데, 위 서식 중 '과세표준액'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취득세액 등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란에 기재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8. 16. 위 나.항 기재 신고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63,297,830원, 농어촌특별세 7,384,740원, 지방교육세 6,329,78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일반과세가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서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누락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205,717,950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8,989,3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01,140원을 부과(이하 가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redacted]동 [redacted]호'로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동·호수([redacted]동 [redacted]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4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취득세 신고서 중 '취득세 등'란을 비워두라는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과세표준액만을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였고, 그 후 담당 공무원이 위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출력해 준 납부서의 금액대로 납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중과세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과세가 이루어진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지시 및 세액 계산의 오류 때문이지 원고의 잘못 때문이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신뢰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공적견해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4

제33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서(위 별지 제3호서식)에 구체적인 세액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의 전제사실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서에 세액 등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잘못 계산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지시 또는 세액 계산상의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어디까지나 납세자가 본인의 책임 아래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등에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원고 스스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위 세무공무원의 지시 등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4

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